

# 고성군세조례 일부 개정조례안

(의안번호 제904호)

## 심 사 보 고 서

### 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05. 5. 17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고 성 군 수  
나. 회 부 일 자 : 2005. 5. 18  
다. 상 정 · 의 결 일 자 : 2005. 5. 25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총무위원회 상정 · 의결

### 2. 개정이유

지방세법이 개정(법률 제7332호, 2005. 1. 5공포)되어 종합토지세가 재산세에 통합되고 주택에 대하여는 건물과 그 부속토지를 통합과세하는 등 부동산보유세제가 개편됨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고, 법령 및 자치법규 제명 띄어쓰기 시행에 따라 제명을 표기코자 하려는 것임.

### 3. 주요내용

- 가. 재산세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에서 토지는 9월 16일부터 9월 30일로, 건축물은 7월 16일부터 7월 31일로, 주택은 토지와 건축물분 납부시 산출세액의 2분의 1을 나누어 납부하는 것으로 조정 (안 제25조의2)
- 나. 재산세의 과세표준액 변경으로 인한 세부담 증가를 막기위한 과세표준 구간조정 및 세율 인하 (안 제27조)
- 다. 자동차세 중 cc당 140원의 세액이 적용되는 배기량 기준을 1,500cc에서 1,600cc로 조정 (안 제37조1항1호)
- 라. 종합토지세가 재산세에 통합되고 주택이 건축물과 토지에서 분리되어 독립적인 과세대상이 됨에 따라 종합토지세 관련 항목의 삭제 (안 제71조 내지 제82조)

#### 4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- 고성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의 개정(법률 제7332호, 2005. 1. 5 공포)으로 종합토지세가 재산세에 통합되고, 주택이 건축물과 토지에서 분리되어 독립적인 과세대상이 됨에 따라 과세대상을 조정하고, 재산세의 납세의무자가 사실상의 소유자 등으로 통합·변경됨에 따른 관련 조문 개정과 법령 및 자치법규 제명의 띄어쓰기 기준에 맞게 표기하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법예고 등 입법 필요 절차를 거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
-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종합토지세가 재산세와 통합되고,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의 과세표준액의 변경으로 인한 급격한 세부담 증가를 막기 위하여 과세표준 구간조정 및 세율인하에 따른 조문을 개정하고 토지 및 주택의 재산세 납기가 변경, 신설됨에 따라 재산세 납기를 조정하였으며, 종합토지세가 국세와 지방세로 이원화 되어 재산세로 통합됨에 따라 종합토지세 관련 조문을 삭제하고,
- 종합토지세가 재산세에 통합됨에 따라 각각의 세목에서 규정하던 감면대상, 신고대상 및 사유를 재산세에서 일괄 규정하고, 주행세 세율 변경과 자동차세 중 cc당 140원의 세액이 적용되는 배기량 기준을 1,500cc에서 1,600cc로 조정하였으며,
- 종합토지세가 재산세에 통합되고 주택이 건축물과 토지에서 별도의 과세대상으로 분리됨에 따라 도시계획세의 납세의무자 규정 및 과세표준을 조정하고, 개정된 자동차세 세율적용 시기 및 농업소득세 과세 중단 기간을 부칙에서 정하는 등 관련 조문을 정리하려는 것으로 지방세법과 시군세 조례 정비안에 맞게 고성군세 조례를 보완하여 개정코자함은 타당 하다고 사료됨.

5. 질의 및 답변 : 없음

6. 토 론 : 없음

7. 심사결과

- 2005. 5. 25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